

「파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공고」

하수도법 제61조 및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파주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8월 11일

파 주 시 장

1. 대상지역 : 파주시 하수처리구역 내
2. m³당 원인자부담금 : 2,592,000원/m³
3. 문의 : 파주시 환경국 하수도과 하수시설팀(☎ 031-940-5522)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공고는 202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공고 시행일 이전에 인·허가를 접수하거나, 인·허가를 득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할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